

협의공고(공시송달)

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창원 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의 개요

- 사업명: 창원 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
- 사업위치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8번지 일원
- 사업시행자: 경상남도교육청

2. 협의기간 ·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

- 협의기간: 본 공고일로부터 14일간(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협의장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3층 재정과(전화: 055-268-1482)
- 협의방법: 소유자 개별로 협의하며,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,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.(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,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

3. 보상시기 · 방법 및 절차

- 보상협의요청(보상금 개별통지) → 협의성립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등기 → 보상금지급
-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(또는 소송)
- 보상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약 20일 이내(등기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) 지급되며,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,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
4. 주의사항

-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 (소유권 외 권리사항)을 먼저 해지(해제)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.
-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,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(보상금 지급 전)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(계약)에 응하시길 바랍니다.
-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,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5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(일반용 1부, 부동산매도용 1부, 매수자)
※ 경상남도교육청,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
-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(주소변경사항 모두 기재)
- 협의대상 토지(건물)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(임야 또는 건축물)대장등본 각 1부
-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(보상금 수령용)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(보상금청구서 등 제공 양식에 날인)
-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1부(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)

6. 협의공고(공시송달) 대상

-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29-1[붙임 조서 참조]

2026년 4월 9일

경상남도교육감

